

- 지방세법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에 “간접비용을 포함하되-”라고 하였지만 “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”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의 계정처리 여부에 불구하고, 실제 매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전액이 건축비 취득비용에서 제외대상 비용인지
- 아니면 실체는 과세표준에 제외될 수 있으나,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82조2의 제1항 제2호 “판결문·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계정으로 처리하여 (또는 환급을 받지 않으므로 선급부가가치세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) 법인 장부에 있는 30%(위의 A현장 예시 참조)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비 취득비용 제외대상인지
- 그렇다면 법인장부에 A현장의 원가계정이 아닌 본사의 영입의 비용 “잡비”계정으로 처리하였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전액 건축비 취득비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
-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3의 “취득가격의 범위”에 “--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.”의 지방세법상의 부가가치세는 국세의 부가가치세와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 회계처리준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

본 질의자의 의견은 부가가치세법에서 “공제하지 아니한다”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결정할 때 매출세액합계-매입세액=납부세액(-시 환급세액)을 산정할 경우에 면세부분에 해당하여 단지 환급만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지 부가가치세법 원래의 부가가치세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므로, 위의 취득세 건축비용 또는 기타비용의 취득비용과 관련하여 계정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법인장부상 원가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조문과 같이 “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”라고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됨.

<질의 2> 입주자가 납부하기로 한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건축비 원시취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.